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13. 김영호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 2024. 6.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7.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8)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24.11.2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기존의 학교 기준에 대한 변화

가 요구되고 있음. 폐교 또는 학교가 통폐합되는 지역에서는 학생의 통학거리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반면,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특히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제정안은 도시 지역(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서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캠퍼스를 원활하게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기존 학교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특히 일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설립기준의 탄력적 적용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시적인 변화와 함께 소규모학교뿐 아니라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분교의 설립·운영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필요

성에 공감할 수 있음.

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를 적용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대도시 기준인 인구 50만명¹⁾ 이상보다 완화한 것으로, 개발수요가 집중된 경기도를 비롯한 “도” 지역의 중규모 도시지역에서도 과밀학급 등 여러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학령인구 및 교원정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캠퍼스)의 신·증축 등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고,

도시형캠퍼스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외 규제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특례가 불명확하여 특별법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1)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형캠퍼스를 원활하게 설립·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설립지역 및 기준, 유형,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및 설립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설립 유형 중 공공시설 활용형을 삭제하여 신설형에 포함시키며,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해당 도시내로 정하고, 교육감이 설립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나. 도시형캠퍼스의 유형을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구분하여 분류함(안 제7조제1항).
- 다. 도시형캠퍼스에서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도록 명시함(안 제12조).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도시형캠퍼스”를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를 “「학교급식법」에 따른다”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 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도시형캠퍼스</u> 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 ----- ----- ----- <u>해당 도시 내에서</u> <u>도시형캠퍼스</u> ----- -.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 퍼스 설립 기준을 <u>따로 정할</u> <u>수 있다.</u>	② ----- ----- ----- <u>시·도 조례</u> <u>로 정할 수 있다.</u>
③ (생 략)	③ (원안과 같음)
제7조(유형 및 종류) ① 도시형캠 퍼스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유형 및 종류) ① ----- ----- -----.
1.2. (생 략)	1.2. (원안과 같음)
3. <u>공공시설 활용형 도시형캠퍼</u> <u>스: 기존의 공공시설 일부 또</u> <u>는 전체를 학교시설로 리모</u> <u>텔링 하거나 증축하여 구축</u> <u>하는 도시형캠퍼스</u>	<u><삭 제></u>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제12조(학교급식) ① 본교의 장은 도시형캠퍼스에서의 학교급식	제12조(학교급식) ① -----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u>다만, 본교와 공동급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에서 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u>교육감이 따로 정한다.</u>	----- ----- -----<u>. <단서 삭제></u> ② ----- ----- <u>「학교급식법」에 따른다.</u>
--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2. “도시형캠퍼스”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
3. “본교”란 도시형캠퍼스를 운영·관리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
4. “분교”란 본교와 분리된 학교시설에서 본교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4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칭) ①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형 및 종류) ①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편형 도시형캠퍼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개편한 도시형캠퍼스
2.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

학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제7조(교육과정)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학과별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생자치활동)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0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도시형캠퍼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1조(학교급식) ① 본교의 장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다.

제12조(학교운영의 통합·분리) ① 본교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설립·운영 중인 공립학교의 분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캠퍼스로 본다.